

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
발 의 자	송용자 의원 외 5명

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용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 . . .

발 의 자 : 송용자 · 김낙관 · 김재우 · 이선우
이지연 · 홍난이 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청년 구직촉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(안 제19조제2항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

※ 「청년기본법」('20. 1. 9 국회 본회의 의결) * 8월 시행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조례 제 호

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한다.”를 “하며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 지원) ① (생 략)	제19조(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소외·사회부적응·구직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
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기업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(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,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청년 구직활동 촉진 및 창업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소요가 예상됨(안 제19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-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등 추후 절차가 진행되어야 정확한 재정 소요 추산이 가능함.

4. 작성자

-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용국(054-480-2612)